의안번호	제275호
의결연월일	2006.4.11

예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6. 3. 29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6. 4. 4

다. 상 정 일 자 : 2006. 4. 10
제130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제1차 총무위원회

2. 제안설명요지(재무과장 : 고영세)

가. 제안이유

ㅇ 『지방세법』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5만원 이하의 재산세(주택분)에 대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월 납기로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

나. 주요골자

ㅇ 소액 지방세 수납 관련 조문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,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.

ㅇ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 가능토록 『지방세법』 개정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 부여

ㅇ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의 고려 없이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것은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징세비용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하므로 산출세액 5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함.

ㅇ 차량을 공매로 인수한 후 미등록 할 경우 과세를 하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공매 낙찰자에게 자동차세 부과근거 마련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정낙춘)

○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5. 12. 31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

- 그동안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었던 내용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과
-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소득할 주민세의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
- 담배소비세의 세율 인상조정 등

○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내용과 충청남도의 군세조례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.

4. 질의 · 답변요지

ㅇ 생 략

5. 토 론 요 지

ㅇ 없 음

6. 심 사 결 과

ㅇ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　　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　　음